

『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읍·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(안 제4조)
- 지원기준 및 절차(안 제5~6조)
- 시설 관리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21. ~ 4. 28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읍·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공지사항, 행정정보,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기존 방송시스템의 노후, 난청, 울림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